

서울특별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594
----------	------

2024년 3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옥재은 의원(찬성 49명)
나. 제안일 : 2024년 2월 5일
다. 회부일 : 2024년 2월 7일
라. 상정일 : 제32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 3월 4일 상정·의결(수정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옥재은 의원)

가. 제안이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지역회의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시와 지역회의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지역회의의 공공시설 이용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지역회의 자문위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나. 입법예고(2024.2.14. ~ 2.18.) 결과: 의견없음.

다.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가.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이하 ‘본 제정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1)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와 서울특별시의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서울지역회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 본 제정안은 제정의 목적, 시장의 책무, 재정 지원, 협력체계 구축, 공공시설의 이용, 포상,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문체계 및 주요 내용 >

조문 체계	주요 내용
제1조(목적)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시장의 책무)	- 시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와 협력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평화통일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함.
제3조(재정 지원)	- 시장은 지역회의가 제3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제4조(협력체계 구축)	- 시장은 지역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와 지역회의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함.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 시장은 지역회의의 활동을 위하여 관련 조례 등에 따른 공공시설의 이용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용에 협조할 수 있음.
제6조(포상)	- 시장은 지역회의 활동을 통해 지역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지역회의 자문위원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음.
제7조(시행규칙)	-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지역회의 등)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 지역회의는 1980년 10월 27일에 설립되어, 산하 25개구 협의회가 있으며 현재 3,645명의 회원이 활동중에 있음.

[법정단체 현황('24.2.1.기준)]

구 분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민주평통
지원근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 市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법 시행령 제30조의2
설립일자 (서울시조직)	1981. 10. 1.	1989.4.1	1989.4.1	1980. 10. 27
조직구성	25개자치구 지회, 426개동회	25개자치구 협의회, 376개동 위원회	25개자치구 지회, 425개동 위원회	25개자치구 협의회
대 표 자 (임기)	김연포('56.2.11.) ('24.2.1.~'27.1.31)	공석 대행 : 박태순('46.4.17.) ('23.6.9~'24.정기총회 시까지)	김성덕('57.6.18.) ('22.11.11.~'25.11.10.)	윤동한('47.12.30.) ('23.9.1.~'25.8.31.)
회 원 수	45,842명 (전국 210만여명)	58,000명 (전국 80만여명)	221,255명 (전국 320만여명)	3,645명 (국내외 21,984명)
직 원 수	6명	2명	3명	1명
소 재 지	동대문 천호대로 389, 6층	양천 신목로 10	동작 여의대방로20길 23-1, 자유회관1층	중구 장충단로 84, 201호
'24년 추진사업	더불어 사는 공동체, 행복한 서울 - 약자와의 건강한 동행 - 쪽방촌 이야기 - 탄소중립 실천 사업 - 새마을지도자대회 - 새마을여인대회 - 국민독서경진대회	밝고 바른 사회건설을 위한 의식개혁운동 - 안전문화 정착교육 - 여성대학 - 사랑의 꾸러미사업 - 민주시민개혁 대회 - 의식개혁 글짓기대회 - 통일안보체험 행사	자유민주·시민의식 함양 실천운동 - 안보지킴이 워크숍 - 안보지킴이 다짐대회 - 안전의식제고 활동 - 통일관 정립 강연회 - 호국영령 추모 위령제 - 통일안보체험 행사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반도 - DMZ 사계를 만나다 - 탈북청년과 함께하는 북한인권세미나

- 본 제정안은 평화통일의 지역사회 여론 형성 및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지역회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광역시·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 조례 제정 현황: 14개 시도 >

연번	시도명	조례명	제정일자
1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 조례	2020. 7. 3.
2	경기도	경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1. 7.
3	경상남도	경상남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2020. 12. 31.
4	경상북도	경상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2018. 12. 27.
5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 조례	2020. 11. 13.
6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2019. 10. 10.
7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2020. 7. 15.
8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2020. 7. 9.
9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2020. 2. 26.
10	전라남도	전라남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지원 조례	2020. 6. 29.
11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2019. 3. 8.
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12. 31.
13	충청남도	충청남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7. 10.
14	충청북도	충청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2019. 7. 5.

- 다만, 조례제정 유·무와 상관없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 30조의2) 등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고 현재도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 바, 조례의 실효성 및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조례안 제정의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경비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행정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원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법정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단체명	'21년(교부액)	'22년(교부액)	'23년(교부액)	'24년(예산액)
계	321,501	1,987,279	631,053	437,753
새마을회	101,738	1,488,889	170,231	121,661
바르게살기운동	67,236	360,486	141,431	126,561
한국자유총연맹	84,027	73,384	124,321	124,336
민주평통	68,500	64,520	195,070	65,195

나. 세부내용 검토

1) 목 적(안 제1조)

- 안 제1조는 지역회의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본 제정안의 제정 목적을 밝힘으로써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다만, 본 제정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지역회의 설치 및 경비 지원 등)을 조례에서 다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근거를 명확히 또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2) 시장의 책무(안 제2조)

- 안 제2조는 시장이 지역회의와 협력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평화 통일 분위기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안 제2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와 협력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평화통일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재정 지원(안 제3조)

- 안 제3조는 시장이 지역회의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안 제3조(재정 지원) 시장은 지역회의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정책의 자문 및 건의
2.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 및 수렴
3.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지지기반 확충
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5.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공감대 확산
6. 그 밖에 지역사회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다만, 제6호의 “그 밖에 지역사회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기존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사업과의 중복지원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집행에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4) 협력체계 구축(안 제4조)

- 안 제4조는 지역회의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여 협력 강화를 위한 근거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안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와 지역회의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 다만, 안 제2조(시장의 책무)에서 지역회의와의 협력 노력 내용과 중복되는 의미로 볼 경우 실효성 측면에서 논의의 여지는 있다고 사료됨.
- 또한, “시와 지역회의와의 협력체계를 구축”에서 “시”를 앞의 조문에서 약칭을 사용하지 않다가 갑자기 약칭을 사용하고 있어,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를 “서울특별시”로 표기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됨.

5) 공공시설의 이용(안 제5조)

- 안 제5조는 지역회의 활동을 위한 공공시설 협조 요청 시, 시설 이용에 협조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지역회의의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안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지역회의의 활동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 공공시설의 이용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 다만,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이라고 하고 있어, 다른 조례가 더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바, “등”을 삭제하여 조문의 명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6) 포상(안 제6조)

- 안 제6조는 지역회의 활동에 기여도가 큰 자문위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6조(포상) 시장은 지역회의 활동을 통해 지역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지역회의 자문위원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다만, 표창 수여의 기준인 “현저한 기여”라는 문구로 인해 객관성보다 자의적인 판단에 따르게 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 논의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임.

7) 시행규칙(안 제7조)

- 안 제7조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수정안의요지

가. 수정이유

- 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조문의 명확한 표현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 조문(안 제4조) 및 ‘공공시설의 이용’ 조문(안 제5조)의 일부 자구 표현을 수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4조(협력체계 구축) 중 “시”를 “서울특별시”로 하고, 안 제5조(공공 시설의 이용) 중 “등에”를 “에”로 수정함.

8. 심 사 결 과 : 수정안 가결(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1594
----------	-------------

제안연월일 : 2024년 3월 8일
제 안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조문의 명확한 표현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 조문(안 제4조) 및 '공공시설의 이용' 조문(안 제5조)의 일부 자구 표현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4조(협력체계 구축) 중 “시”를 “서울특별시”로 하고, 안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중 “등에”를 “에”로 수정함.

서울특별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중 “시”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안 제5조 중 “등에”를 “에”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제 정 안	수 정 안
<p>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u>시</u>와 지역회의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한다.</p>	<p>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u>서울특별시</u>와 지역회의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한다.</p>
<p>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지역회의의 활동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u>등에</u> 따른 공공시설의 이용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p>	<p>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지역회의의 활동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u>에</u> 따른 공공시설의 이용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p>

서울특별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와 협력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평화통일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재정 지원) 시장은 지역회의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정책의 자문 및 건의
2.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 및 수렴
3.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지지기반 확충
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5.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공감대 확산
6. 그 밖에 지역사회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지역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와 지역회의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지역회의의 활동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시설의 이용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지역회의 활동을 통해 지역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지역회의 자문위원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